

경영정보II / 콩나물 재배 관련 공문모음

각종 제도시행 및 콩나물 재배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중양협회에서 콩나물 재배에 관한 사항을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의 해 보았다. 원산지 표시제/ GMO표시제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것을 지면으로 싣기로 했다. 앞으로도 중양협회는 회원들의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들을 풀고나아가 여러 문제들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한두채협회

우138-050 / 서울 송파구 방이동 62-3 평원빌딩203호 / (02)2203-4500 FAX 2203-2509

문서번호 대두협 0004-026호

시행일시 2000. 12. 1

받는 곳 공정거래 위원장

선				지		
결	2000			시		
접	일자	2000.		결	상무이사	E
	시간	: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공		
담	당	자	조인상	람		

제 목 표시·광고에 관한 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농림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콩나물 생산자들의 협회입니다.
3. 국내(홍천)에서 캐나다산 콩나물 원료콩으로 콩나물을 생산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했을때, 포장지(제품용기)에 덧붙임의 예시와 같이 "이 콩나물은 홍천 맑은 물로 국내에서 생산 하였습니다" 혹은 "이 콩나물은 수입산 원료콩이지만 홍천 맑은 물로 오존 살균처리하여 국내에서 생산 하였습니다" 라는 실제 행위적인 표시를 하여 유통할 수 있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덧붙임 : 콩나물 원산지 표시의 예시 1부. 끝.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장

질의에 대한 예시 첨부 (수신인 공정거래 위원장)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 “예시”

<예시 1>

- 품 명 : 콩나물
- 원료콩 : 캐나다 産
- 생산지 : 국내 (홍천)
- 생산자 : 홍 길 동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상원리 25

T. 033)888-6699

이 콩나물은 홍천 맑은물로 국내에서 생산 하였습니다.

<예시 2>

- 품 명 : 콩나물
- 원료콩 : 캐나다 産
- 생산지 : 국내 (홍천)
- 생산자 : 홍 길 동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상원리 25

T. 033)888-6699

이 콩나물은 수입산 원료콩이지만 홍천 맑은물로
오존 살균처리하여 국내에서 생산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504-9474 / 전승(02) 504-9476
 표시광고과 과장 김태구 서기관 정정길

문서번호 광고42920-1112

시행일자 2000.12.13 (3)

공개여부 공개

수신 대한두채협회

참조

결	계	대리	과장	국장	사무이사	회장
재	/	/	/	/	e.	/

2000.12.15 접수

제목 질의회신

우리 위원회에 2000.12. 4. 접수된 귀 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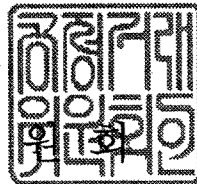
- 다 음 -

□ 질의내용

- 국내(홍천)에서 캐나다산 원료콩으로 콩나물을 생산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포장지(제품용기)에 "이 콩나물은 홍천 맑은 물로 국내에서 생산 하였습니다" 혹은 "이 콩나물은 수입산 원료콩이지만 홍천 맑은 물로 오존 살균처리하여 국내에서 생산 하였습니다"라고 표시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당해 제품이 캐나다산 원료콩을 사용하여 생산되었음을 포장지 등에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당해 콩나물이 국내산 콩으로 생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오존 살균 처리" 등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표현이 아닐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있음. 끝.



공정거래위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질의 (수신인: 농림부장관)

대한두채협회

우138-050 / 서울 송파구 방이동 62-3 평원빌딩203호 / (02)2203-4500 FAX 2203-2509

문서번호 대두협 0002-005호

시행일시 2000. 12. 1

받는 곳 농림부장관

참 조 식품산업과장

선	결		지		
접	일자	2000.	시		
	시간	:	결	상무이사	e.
수	번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질의

1. 농업정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함에 있어서 덧붙임의 "예시"와 같이 원료콩 원산지가 캐나다이고, 그 원료콩으로 재배생산한 장소가 국내(홍천)일때 「생산지 : 국내(홍천)」으로 별도 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덧붙임 : 콩나물 원산지 표시의 예시 1부. 끝.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장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농 립 부

정보통신망

우 427-719 경기도 과천시 중 / 전화 500-2678 / FAX 503-7905
식품산업과 과장 양태선 사무관 이영구 담당 이원선 (E-mail: wslee@maf.go.kr)

문서번호 식품51070-10284

시행일자 2000.12.15. (3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받 음 대한두채협회

참 조

선 략		지 시	
접	일자 2000.12.19 시간 16:00	결	상무이사
수	번호	제	
처 리 과		공	
담 당 자	조 인성	람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콩나물의 생산지표시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회 대두협0002-005(2000.12.1)호, 우리부 식품51070-10262('00.12.8)호와 관련하여 귀회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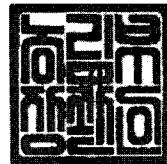
<질의> 캐나다산 원료콩으로 국내(홍천)에서 콩나물을 생산하였을 때, 원료콩의 원산지 표시외에 콩나물의 “생산지:국내(홍천)”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답변> 동 질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요청한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료콩의 원산지 및 생산지를 사실대로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당해 콩나물이 국산콩으로 사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동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바, 원료콩의 원산지표시를 콩나물의 생산지표시 글씨보다 작게 표시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들이 원료콩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앞으로도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에 관심을 갖고 동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농 립 부 장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계도기간 설정 회신 (수신인 대한두채협회장)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농 립 부

우427-719 경기 과천 중앙 1 / 전화 (02) 504-9429 FAX (02) 503-7798
GMO대책실 과장 입재암 사무관 이영구 담당자 김방연(E-mail:bbyy@lycos.co.kr)

문서번호 유대 51168 - 16

시행일자 2001.02.21 (3년)
(경유)

받 음 대한두채협회

참 조

선 람		지 시	
접	일자	2001. 2. 23	결 재
	시간	15:00	
수	번호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조 인영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시행관련 계도기간설정 요청에 대한 검토

1. 관련 : 대두협 0102-003(2001. 2. 9)호
2.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지도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의성 있게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보다는 지도·계도를 위주로 표시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구분유통관리증명서에 의한 사회적검증방법으로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귀 협회에서도 자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 립 부 장



전결 GMO대책실총괄반장 입재암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농 립 부

정보통신망

우 427-719 경기 과천 중앙동1 / 전화 500-1859 / FAX 507-5310
채소특작과 과장 권은오 사무관 이재욱 담당 주필훈 (E-mail: jooph@maf.go.kr)

문서번호 채특51150-210

시행일자 2001.03.05. (3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받 음 (사)대한두채협회장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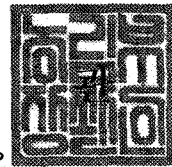
선 람			지 시	
접 점	일자	2001. 3. 8	결 재	상무이사
수 번호	시간	14:00	공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조 인 성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콩나물 재배관련 질의 회신

1. 관련:(사)대한두채협회 대두협 0102-004호(2001.2.28)호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1항에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축산업,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2항에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콩나물생산은 물을 이용한 작물생산이므로 농업에 속하며 또한 콩나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와함께 귀 회에서는 좋은 물을 사용한 양질의 콩나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각 회원 들의 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립 부 장

전결 채소특작과장 권은오



“새천년 새로운 농어촌, 농어업 총조사로 시작합니다”